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통 · 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 - 595명 통 · 리장 ⇒ 605명 통 · 리장으로 조정(통 · 리장수 10명 增)
 - 고아읍(증 3개리) : 원호푸르지오 신축 (원호8리)
경남아너스빌 분리 (문성5리)
초원아파트 분리 (항곡2리)
 - 인동동(증 2개통) : 구평영무예다음 신축 (63통)
구평휴먼시아 신축 (64통)
 - 진미동(증 2개통) : 과밀통 분통 (22, 23통)
 - 양포동(증 3개통) : 휴먼시아 신축 (44~46통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“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”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95명에서 고아읍 중 3명, 인동동 중 2명, 진미동 중 2명 , 양포동 중 3명 총 10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